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662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위

담당변호사 기철

피 고 S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T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2020. 4. 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AG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T(주)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4. 2. 폐업을 한 사실, 피고가 2020. 4. 1. T(주)로부터 주문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한편 원고들이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여 현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221,733,059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도 채권양도행위의 사해해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는 양도인들에게 취소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별지